

**Deloitte.**

# 세무 및 관세 뉴스

2022년 12월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 주목할 만한 사항:



### 조세관리

- 베트남에서 세무 등록한 외국 공급업체의 명단 공지
- 대표 사무소에 대한 사업허가세

### 간접세 ("VAT")

- 베트남 하도급 계약자의 프로젝트 시공 감리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VAT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양도 활동에 대한 VAT
- 국제운송사업활동에 대한 VAT
- 수출가공업체에 제공되는 전자부품의 체크 및 분류서비스에 대한 VAT

### 외국인계약자세 ("FCWT")

- 외국인 전문가 비용 대신지급에 대한 FCWT
- 외국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비용에 대한 FCWT

### 이전가격 ("TP")

- 대출활동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 및 이전가격 신고서 작성

### 법인세 ("CIT")

- 은행 예금 이자 소득에 대한 CIT
- 구매품 반환에 대한 세금 처리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하며 인센티브를 받은 활동을 하는 중속지점에 대한 세금 신고
- 부동산 양도에 대한 CIT

### 개인소득세 ("PIT")

- 외국인 전문가 및 현지 근로자에게 제공된 이익에 대한 PIT

### 무역 및 관세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신규 시행규칙
- 통관절차 완료 후 보세창고에서 보관된 수출물품에서 유래되며 다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절차 및 세금처리
- 지적 재산권 침해, 불법 발신, 상표 & 원산지 위조 방지 및 검토강화
- 해외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수출품에 대한 조세정책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베트남에서 세무 등록한 외국  
공급업체의 명단 공지**

2022년 11월 19일, 세무총국 ("GDT")은 베트남에서 세무 등록한 외국 공급업체의 명단을 공지했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으며, 베트남 단체와 개인에게 전자 상거래, 디지털 기반 사업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공급업체를 관리하도록 한다.

*(세무총국의 2022년 11월 19일 제 357/TB-DNL호 공지)*

**대표 사무소에 대한 사업허가세**

업체의 대표사무소는 생산·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허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12월 02일 제 18224/CTBDU-TTHT호 OL)*







## 법인세 ("CIT") 지침 문서



### 은행 예금 이자 소득에 대한 CIT

기업이 은행 예금의 이자소득을 발생할 경우 이 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Ha Noi 세무국의 2022년 11월 23일 제 57306/CTHN-TTHT 호 OL)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하며 인센티브를 받은 활동을 하는 중속지점에 대한 세금 신고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하며 인센티브를 받은 활동을 하는 중속지점의 경우 기업이 직접 관리 세무국에 제 03/TNDN호 양식에 따라 세금을 신고한다.

기업은 제03-3A/TNDN호, 제03-3B/TNDN호, 제03-3C/TNDN호, 제03-3D/TNDN호 양식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활동에 대한 CIT 납부액을 결정하여, 중속지점이 위치하는 지역의 세무국과 기업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국에 CI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11월 11일 제 17305/CTBDU-TTHT 호 OL)

### 구매품 반환에 대한 세금 처리

기업이 구매품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경우에 불량품 반환이 아니라 상품 판매 활동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사가 구매품을 공급업체에 반환할 때 일반적인인 판매 활동처럼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세금 신고, 납부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11월 11일 제 17307/CTBDU-TTHT 호 OL)

### 부동산 양도에 대한 CIT

기업은 분기별 CIT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제80/20121호/TT-BTC호 시행규칙, 제17.2조 b항에 따라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국가예산에 분기별 잠정 CIT를 납부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11월 17일 제 17527/CTBDU-TTHT 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간접세 (“VAT”) 지침문서

### 베트남 하도급 계약자의 프로젝트 시공 감리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VAT

베트남 하도급 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외국 주계약자에게 프로젝트 시공 감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할 때 주계약자에게 VAT 10%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인보이스의 내용은 제123/2020/ND-CP호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야 작성한다.

베트남에서 외국 주계약자에 제공하는 프로젝트 감리 컨설팅 서비스는 VAT법에 따라 VAT 환급 대상이 아니다.

*(Hanoi 세무국의 2022년 11월 10일 제 54502/CTHN-TTHT호 OL)*

### 국제운송사업활동에 대한 VAT

해상운송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물품이 국제노선을 통해 베트남에서 해외로 또는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해외일 경우, 직접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규제된 적격요건이 충족되면, 이 비즈니스 활동의 VAT는 0% 대상이 된다.

*(Ha Noi 세무국의 2022년 11월 15일 제 55346/CTHN-TTHT 호 OL)*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양도 활동에 대한 VAT

기업이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주택, 기반시설 투자프로젝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 양도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의 세무국에 제01호/GTGT 호 양식으로 프로젝트 또는 각 프로젝트 (해당 지역이나 도시에 여러가지의 주택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의 VAT를 별도로 신고한다.

본사의 다른 일반 생산 및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이 제01호/GTGT호 양식으로 VAT를 신고한다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양도활동을 제외).

*(Hanoi 세무국의 2022년 11월 4일 제 53403/CTHN-TTHT호 OL)*

### 수출가공업체에 제공되는 전자부품의 체크 및 분류서비스에 대한 VAT

수출가공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전자부품 체크·분류 서비스는 수출서비스로 간주되며 규제된 적격요건을 충족하면 VAT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Hanoi 세무국의 2022년 11월 17일 제 55897/CTHN-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개인소득세 ("PIT") 지침문서

### 외국인 전문가 및 현지 근로자에게 제공된 이익에 대한 PIT

- 근로자를 위한 설의 선물은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PIT 산정 기간은 근로자가 선물을 받는 달로 한다.
-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모국으로 복귀한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짐운송 비용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후에 운송업체에 의해 발행한 인보이스가 갖추어 지면 해당 비용은 전문가의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Hai Phong 세무국의 2022년 10월 17일 제 3300/CTHPH-TTHT 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문서

### 외국인 전문가 비용 대신지급에 대한 FCWT

베트남 기업이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의 숙박비와 식비를 지불한 후 외국 기업으로 부터 반환 받고 전문가에 대해 더 이상의 소득을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비용은 FCWT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2년 11월 25일 제 11261/CTH DU-TTHT 호 OL)*

### 외국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비용에 대한 FCWT

기업이 디렉터의 해외 출장을 위해 외국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 외국 항공사가 베트남 대리점 또는 대표 사무소를 통해 항공권을 발행하면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항공사를 대신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다. 베트남 대리점 또는 대표 사무소가 항공사를 대신하여 FCWT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외국 항공사가 베트남에 대리점 또는 대표 사무소 아닌 웹사이트를 통해 회사에 직접 전자 항공권을 발행하고 제80/2021호/TT-BTC호 시행규칙의 제76,77,78,79조에 따라 세금 등록,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외국 항공사를 대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Hanoi 세무국의 2022년 12월 06일 제 59940/CTHN-TTHT 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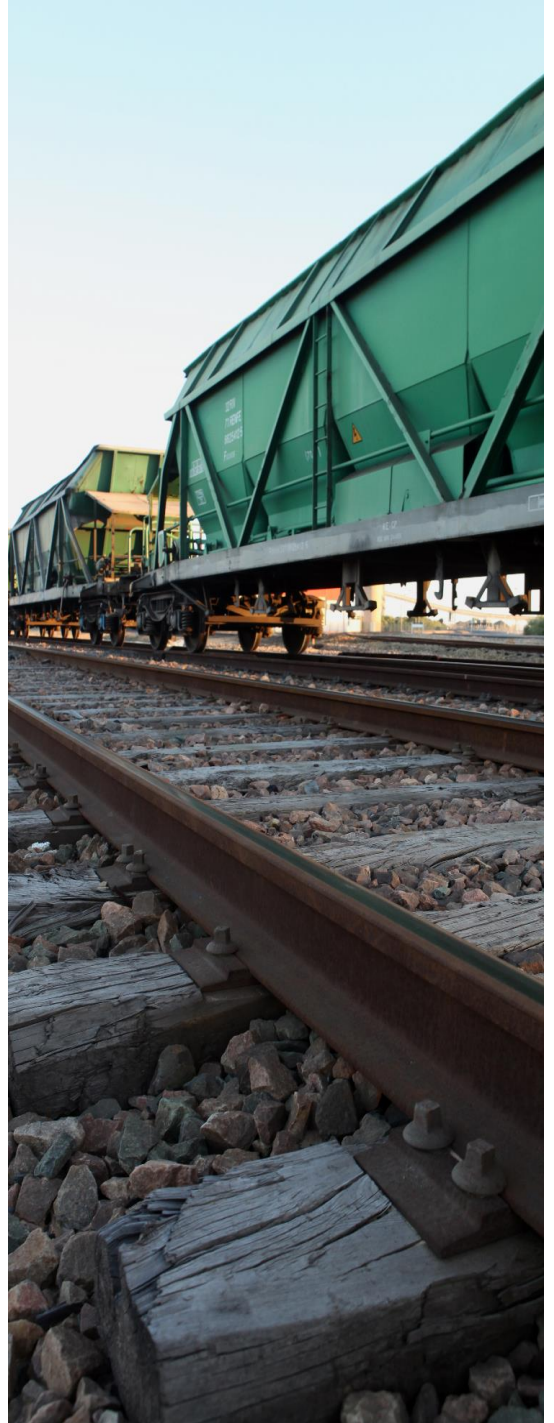
## 이전가격 지침 문서

### 대출활동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 및 이전가격 신고서 작성

회사가 정부의 2020년 11월 5일 제132/2020/ND-CP호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대출활동을 발생하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간주되며 제132/2020/ND-CP호 시행령의 적용대상이다.

회사는 제132/2020/ND-CP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II 및 III에 따라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관한 정보, 거래가격을 확정하고 신고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의 제132/2020/ND-CP 호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CIT 확정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11월 30일  
제/59003/CTHN-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신규 시행규칙

2022년 11월 18일에 산업통상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상품 원산지 규칙을 규정하는 2022년 2월 18일 제 05/2022/TT-BCT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제32/2022/TT-BCT호 시행규칙 ("제32호 시행규칙")을 공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32호 시행 규칙은:

- 제05/2022/TT-BCT호 시행규칙 제4조 1항 a점의 부록 I (상품별 규칙)을 이 시행규칙에 첨부된 부록 I로 대체한다.
- 제05/2022/TT-BCT호 시행규칙 제4조 1항 c점의 부록 III (수출품에 대한 C/O RCEP 양식 및 C/O 추가 신고 양식)을 이 시행규칙에 첨부된 부록 II로 대체한다.

제32호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유효된다.

(산업통상부의 2022년 11월 18일 제32/2022/TT-BCT호 시행 규칙)

## 지침 문서

### 통관절차 완료 후 보세창고에서 보관된 수출물품에서 유래되며 다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절차 및 세금처리

관세절차:

- 기업은 관세절차 완료 후 수출 대기로 보세창고에서 보관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물품의 소유자가 보세창고에서 보관된 물품을 다시 국내 시장으로 수입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 신고를 등록하고 수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처리:

- 기업은 등록된 관세모드에 따른 세금 정책을 수행한다;
- 수출생산을 위해 보세 창고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규제된 적격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VAT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총국의 2022년 11월 14일 제4826/TCHQ-GSQL호 01)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 지적 재산권 침해, 불법 발신, 상표 & 원산지 위조 방지 및 검토강화

관세총국은 도시 및 성급의 관세국에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 2019년 8월 13일 제 5189/TCHQ-GSQL호 OL, 2019년 12월 25일 제7988/CT-TCHQ호 지시, 2021년 2월 24일 제906/TCHQ-GSQL호 OL, 2021년 12월 17일 제5951/TCHQ-GSQL호 OL 등과 같은 관세총국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 통관 시 관세서류 및 물품을 실제 검사할 때 아래와 같이 유의하도록 한다:

(i) 수출 물품의 경우:

- ✓ **검사대상:**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목가구, 플라스틱 제품, 고무타이어, 칼, 가위, 식기, 모터크로스 오토바이 등
- ✓ **검사범위:** 2021년 9월 12일 제111/2021/ND-CP호 시행령 제1조 5항 및 7항에 따른 물품의 라벨링 및 원산지 표기 .

(ii) 수입 물품의 경우:

- ✓ **검사대상:** 베트남에서 무역/소비를 위해 주요 시장에서 수입된 의약품, 식품, 주류, 맥주, 잡화, 전기 및 전자 가정용품, 화장품, 의류
- ✓ **검사범위:**
  - 관세총국의 2019년 8월 13일 제5189/TCHQ-GSQL호 OL, 항목1.1의 지침에 따른 상품의 라벨링 및 원산지 표기
  - 관세총국의 2019년 8월 13일 제5189/TCHQ-GSQL호 OL, 항목 1.1, b.2.9점의 지침에 따라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물품 검사

*(관세총국의 2022년 11월 14일 제4823/TCHQ-GSQL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 해외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수출품에 대한 조세정책

기업이 해외 보세창고로 물품을 보내기 위해 수출 신고한 후 이 물품을 해외 파트너에게 판매하는 경우 관세총국은 세무총국에 수출매출 인식 및 인보이스 발행 시점 결정에 대하여 02가지의 방안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 **방안 1:** VAT 영수증 발행/수출 매출 인식 시점은 물품 판매 및 물품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시점 (보세창고 출고일자)이다.
- **방안 2:** VAT 영수증 발행/ 수출매출인식 시점은 수출 신고 절차가 완료되며 물품이 베트남 밖으로 수출된 후이다. 그러나 이시점에는 물품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이 충분하고 합법적인 정보를 담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관세총국은 세무총국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상품 판매 시점에 방안1 적용한다. 기업이 2020년 10월 19일 제123/2020/ND-CP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구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 고객에게 상업인보이스 발행 시점 (즉, 수익 인식 시점)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및
- 해외 파트너에게 물품 판매, 소유권 및 사용권 이전 시점을 통보기한을 회사에 지침을 제공한다. (예: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관세총국의 2022년 11월 18일 제 4916/TCHQ-GSQL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